

**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** (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)

경 영 분 야	기 술 분 야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</li> <li>2.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</li> <li>3.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</li> <li>4.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</li> <li>5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</li> <li>6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</li> <li>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</li> <li>2.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</li> <li>3.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</li> <li>4. 「변리사법」에 따른 변리사</li> <li>5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지도사</li> <li>6.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초기술 분야, 산업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</li> <li>나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</li> <li>다. 국공립연구기관</li> </ol> </li> <li>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</li> </ol>